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1.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김용석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266호

다. 제출일자 : 2018. 11. 27.

라. 회부일자 : 2018. 11. 28.

2. 송아량 의원 발의안

가. 제 출 자 : 송아량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334호

다. 제출일자 : 2019. 1. 24.

라. 회부일자 : 2019. 1. 31.

II. 제안사유

1.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안

- 택시 운수종사자의 특정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절반에 가까운 범죄가 성범죄로 나타났음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고, 재범인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택시 운수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

본 조례의 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의 조항을 구체화 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복리후생·서비스 평가·서비스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구체화하여 추가하고, 보조금의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중단 사유를 명기하고자 함

2. 송아량 의원 발의안

-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울시의 감독 의무, 목적 외 사용 시 재정지원 환수조치 및 해당 사업의 재정지원 제외 등 제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안

- 가. 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함(안 제 10조)
- 나. 서비스 평가 결과 하위 30%, 준수사항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현행 법 제24조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한 보조금의 제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2. 송아량 의원 발의안

- 가. 택시 재정지원금에 대한 재정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울시 감독 의무, 목적 외 사용 시 재정지원 환수조치 및 해당 사업의 재정지원 제외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IV. 참고사항

1.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간 : 2019. 1. 4 ~ 11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수정가결

- ▶ 운수종사자 교육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수종사자 교육은 연수기관을 자치단체장이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지정된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별도 지원을 예정하는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지원을 위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2019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별도의 규정 신설은 지원을 예정하는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경우 택시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 개정이 필요

- ▶ 유가보조금 지급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국토부 유가보조금지침 지급기준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경우 지원을 예정하는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 우리부서에서는 취객 등 차내 폭력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 신변보호 및 안전운행 환경조성은 위해 택시내부 보호격벽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보호격벽 설치비는 시비지원 50%, 사업자부담 50%로 '19년 250대 보급 예정임

이에 따라 보조금(시비50%)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 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신설조항에 7.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택시내 보호장치 설치 추가 필요

2. 송아량 의원 발의안

가. 관계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2. 8 ~ 15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원안가결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1.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복리후생 지원 사업’,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유가보조 사업’을 택시 재정지원 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재정지원에 대한 감액 또는 중단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재정지원 사업 규정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부·보조 사업의 경우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된¹⁾ 사항을 반영하여 ‘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복리후생 지원 사업’,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유가보조 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참고 :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개정일 2014.05.28. / 시행일 2016.01.01.

- 다만, ‘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복리후생 지원 사업’ 중 ‘운수종사자의 교육’의 경우 서울시가 이미 법과²⁾ 조례³⁾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운영 및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 지원 사업’의 경우 이번 택시요금 인상시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 생활임금⁵⁾ 수준을 감안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택시회사·한국스마트카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⁶⁾ 바 있어 향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정도를 살펴가며 후속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 택시요금 1만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⁷⁾ 2011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현행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이 73.6%⁸⁾ 이르는 등 이미 카드결제가 주된 결제수단으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한 상황과 여타 중소 민간사업자에 대한 카드결제 지원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임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일 : 2019년 2월 16일 04시

5) 서울시 생활임금 : 월 285만원

6) 업무협약서(2018.9.18) 및 부속협약서(2018.11.15.) 주요내용

: ▲효력기간을 택시요금인상 시부터 차기 택시요금 조정 시까지, ▲택시요금 인상 후 6개월 동안 납입기준금 동결, ▲납입기준금 동결 후 수입급 증가분만큼 납입기준금 인상, ▲납입기준금 인상액 중 간접비를 제외(20% 이내)한 전액 임금에 반영·지급('19.12.31까지), ▲'20년 이후 노사 합의에 의한 배분을 조정이 가능토록 하되 처우개선분(추입증가분의 최소 73%)은 계속 보장

7)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 2011.12.29. 제정 / 2012.1.1. 시행

8) 택시요금 카드결제율 변화 : 2010년 38.9% → 2018년 73.6%

- ‘유가보조 사업’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⁹⁾ 따라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를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¹⁰⁾ 근거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서울시가 의견으로 제출한¹¹⁾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택시내 보호장치 설치’ 사업 신설의 경우 2019년 예산 편성¹²⁾ 과정에서 시의회로부터 동 조례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적을¹³⁾ 받은 바 있으며, 해당 조항 미신설시 전액 불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최근 여성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고 이후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재정지원에 대한 감액 또는 중단 근거 관련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하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및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감액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재정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서울시는 재정지원 대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9) 제50조(재정 지원)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3호〕

11) 택시물류과-2703(2019.01.24.)

12)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 : 25백만원 (100,000원 × 250대)

13) 제284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예산안 심사(2018.11.26.)

2. 송아량 의원 발의안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 재정지원금에 대한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울시 감독 의무 강화, 목적 외 사용 시 환수조치 및 해당 사업의 재정 지원 제외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적정 사용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¹⁴⁾ 근거하여 ①택시 재정지원금에 대한 재정지원 목적 외 용도 사용금지, ②시장의 택시 재정지원금 적정 사용 감독, ③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 용도 사용시 재정지원금 환수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제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다 할 것임
- 아울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¹⁵⁾, 보조사업에 대한 수행상황 점검¹⁶⁾, 보조사업

14) 제8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15) 제27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에 대한 실적보고¹⁷⁾ 등 보조금의 적정 사용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택시 재정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선정부터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17)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